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 및
제공 정보 확대 등〉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11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 및 제공 정보 확대 등	2

I. 제안경위

2026년 5월 11일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6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별도의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택의 경우 소유자 또는 입주자는 건설 과정에서 사용된 시멘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지 못해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이에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및 제66조제1호의4).

Ⅲ. 검토의견

1.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 및 제공 정보 확대 등

개정안은 ① 시멘트를 재활용하는 자 또는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¹⁾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②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③ 이러한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및 제66조제1호의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시멘트를 <u>제조하는 자</u> 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u>제조에</u>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 <u>제조하거나 재활용하는 자 또는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u> ----- ----- <u>제조와 재활용에</u> ----- ----- -----

1)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현행	개정안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u>정보</u>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3. (생략) 1의4.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u>정보</u>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 19. (생략)	②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유통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정보 및 폐기물 사용 시멘트 유통 정보----- -----. 제66조(벌칙)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13조의6제1항 또는 제2항--- ----- -정보 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유통 정보----- ----- 2. ~ 19.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14²⁾에 따라 ‘시멘트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이하 “폐기

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량, 폐기물의 사용량 및 사용 비율 등 정보를 분기별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하거나 시멘트 제품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1999년 시멘트 소성로(킬른)³⁾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⁴⁾로 인정된 이래 시멘트 업계에서는 석탄재, 오니 등을 대체원료⁵⁾로,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을 보조연료⁶⁾로 재활용하여 시멘트를 제

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14(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이하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
2. 폐기물의 원산지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의 구성성분
 - 가. 폐기물이 대체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별표 5의3 제2호나목2)가)(4)(가)에 따른 시험 결과에서 확인 가능한 성분
 - 나. 폐기물이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별표 5의3 제2호마목1)가)(1)에 따른 시험 결과에서 확인 가능한 성분
4.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량
5. 폐기물의 사용량 및 사용비율
6. 폐기물의 위탁자 및 반입량

②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를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1.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의15서식에 따른 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법
2.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및 제1호에 따른 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별표 5의7에 따른 표기 방법에 따라 시멘트 제품의 포장지에 표기할 것

③ 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공개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시멘트 소성로: 분쇄된 원료(석회석, 규석, 점토 및 산화철 등)를 넣어 1,450~1500도 수준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가마

4)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

5) 대체원료: 시멘트 원료 중 점토질과 규산질 성분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료(폐기물)로서 주로 석탄재, 오니, 광미 등

6) 보조연료: 시멘트 소성로를 고온으로 가열하기 위한 보조 에너지원으로서 사용하는 연료(폐기물)로서 주로 폐타이어,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고무류, 폐목재 등

조⁷⁾하고 있음.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량은 2014년 643만톤에서 2024년 806만톤으로 증가하였고,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의 비율 역시 2014년 13.7%에서 2024년 18.2%로 상승 추세⁸⁾를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 제품은 6가 크롬(Cr6+)⁹⁾, 비소, 납 등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해당 시멘트 제품이 사용된 주택과 건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는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2011.9.27. 환경부령 제394호 개정)에 따라 도입)하고 있던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에 관한 정보 공개¹⁰⁾’를 2024년 9월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2025. 3. 21. 시행)하였음.

이러한 입법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내 6가 크롬의 관리기준에

7) 국내 8개의 시멘트 제조사(10개 공장). 유니온시멘트의 경우 폐기물을 보조연료로 사용하지 않고, 대체원료로 사용하고 있음.

8) 시멘트 생산량: (2014년) 4,705만톤 → (2024년) 4,419만톤
폐기물 사용 시멘트: (2014년) 643만톤 → (2024년) 806만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9) 합금, 용접, 도금, 도색 등에 사용되는 크롬 화합물로서 장기간 노출 시 폐암을 유발하여 고용노동부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

1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7. 시행)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다. 폐기물을 이용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와 유통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조사된 중금속 함량 등의 자료는 전산화하고, 관련 정보(폐기물 공급자, 폐기물의 종류와 양, 중금속 함량 등)를 당해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매 반기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대한 우려는 지속¹¹⁾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대상을 제조 단계(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유통 및 주택건설 단계에서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참조).

이에 개정안은 정보공개 의무 대상을 시멘트를 재활용하는 자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또한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유통 정보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투명한 유통정보를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① 재활용 제품인 시멘트를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주택건설업자, 판매자에게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므로,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입주자가 사용 시멘트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¹²⁾되며,

② ‘시멘트를 재활용하는 자’, ‘판매자’ 등은 특정하기 어렵고, 레미콘 제조사와 소규모 건재상(建材商)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판매정보 공개에 따른 실익이 부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1) 6가 크롬 관리기준 관련 쟁점

- 시민단체: 시멘트업체의 자율관리에 맡겨진 6가 크롬의 관리기준은 20mg/kg로, EU(2mg/kg)의 10배, 미국(5mg/kg)의 4배 이상 완화되어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일본(20mg/kg)은 원자재인 포틀랜드 시멘트(분말)를 대상으로 하나, 유럽(EU)은 혼합 완제품인 모르타르를 대상으로 하므로 직접 비교는 어려움.

12) 국토교통부도 같은 의견임.

한국시멘트협회는 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 관련 업계 부담가중, 영업 비밀 유출, 재활용 제품에 대한 사회적 불안 유발, 과도한 형벌 적용 등이 우려되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한국주택협회는 적법한 품질관리를 거쳐 유통 중인 제품에 별도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경우 소비자 불신이 조장되고, 다양한 자재·건축물 중 시멘트·주택에만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위배되며, 제조공정 정보의 생산·검증 권한이 없는 주택사업자에게 공개 책임과 벌금 부과는 과도한 입법조치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반면,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¹³⁾는 현행법 체계에서 유통·주택건설 단계에서는 시멘트의 폐기물 혼합비율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 내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침해의 우려¹⁴⁾가 큰데도 국내기준이 외국에 비해 느슨하게 자율관리되거나¹⁵⁾

13)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환경산업계가 참여하여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의 권익 보호 및 시멘트 제조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세부 참여 단체 명단은 아래와 같음.

지역주민	제천송학환경사랑,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영월한반도면주민발전위원회, 강릉사랑시민연대, 동해삼화동주민발전협의회,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단체	글로벌에코넷,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와함께, L-ESG평가연구원, 전태일재단·시민속으로 전태일, 건강돌봄시민행동,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한국입법기자협회, 올바른원산지실천협회,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인천서구지회, 인천시서구환경단체협의회, 전국환경피해대책협의회, 수도권매립지종료주민대책위원회, 전국불량골재감시단,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시민단체협의회, 친환경추진국민운동본부중앙회, 전국주부환경감시단, 국제청년환경연합, 환경국제전략연구소
환경산업계	한국환경기술사회, 한국자원순환연합회, 한국고형연료제조사업자협동조합, 한국폐기물에너지산업협회,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한국복합필름재활용협동조합,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한국폐합성수지물질재활용협의회, 전국병의원포장재자원순환협회, 한국환경복지협회, 한국석타회재활용협회,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자료: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14) 동 위원회에 따르면 건축물에 사용된 폐기물 사용 시멘트가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음.

기준조차 미비한¹⁶⁾ 문제가 있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8호),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6호))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7호),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9호))이 각각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들 개정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

연번	개정안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주요내용	발의일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2209298)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일반에게 공개함.	2025. 3. 24.
2		황운하의원 (2210476)		2025. 5. 12.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2212707)	모든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일반에게 공개함.	2025. 9. 4.
4		박해철의원 (2213289)		

주) 2026. 7. 3. 기준

문 의 처

02)6788-5548

15) 6가 크롭

16) 카드뮴, 수은, 탈륨 등